

[2009년 개정 '가정법' 수록]

가정법률상담사배집

어떻게 할까요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6670



서울시립도서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머 리 말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오늘날 우리 가정의 위상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가족해체'라거나 '위기의 가정'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으며, 가치관의 변화는 새로운 가정윤리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혼인율과 출산율의 저하, 이혼율의 급증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 일부 특히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과 복종으로 유지되어 온 가정윤리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가정'과 '가족'은 존재하며,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단위로서 '가정'은 그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1956년 설립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갈등과 마찰로 인해 번민하는 이웃들의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좋은 사람의 표양으로 여기는 우리 정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가족법에 대한 이해조차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족법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는 것을 자주 보아 왔기에 상담소에서는 지난 1976년부터 「어떻게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가정문제들을 가족법에 근거하여 사례별로 모아 상담사례집으로 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간 상담소를 찾았던 많은 내담자들을 중심으로 폭넓게 보급되어 가족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법의 생활화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가족법 개정에 따라 1983년과 1990년, 2002년에 개정판을 낸 바 있으며, 2005년의 호주제 폐지 및 2007년 가족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법 및 개정 민법에 의거 상담사례들을 대폭 수정·보완하고 전반적으로 체계를 혁신한 새로운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소는 법률구조 활동에 충실하며 아울러 가족법 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면서 가족법의 개정에 따라 이 책의 수정·보완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처럼 법이 모든 것의 잣대일 수는 없으며,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권리 위에 잡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아울러 다른 이들의 권리도 지켜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구성원 간의 모든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가족법에 대한 이해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의 생활지침서로서 필독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8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머리말 / 3

제1장 / 약혼 ... 23

- 1) 약혼은 만 18세 이상 가능하며, 강요할 수 없다
- 2)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 3)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는 금치산자(禁治産者)의 약혼은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다
- 4) 약혼했다고 해서 혼인을 강요할 수 없다
- 5)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혼사유가 된다
- 6) 약혼한 후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파혼사유가 된다
- 7) 성병은 파혼사유가 된다
- 8) 불치의 정신병은 파혼사유가 된다
- 9) 약혼자가 타인과 약혼한 것은 파혼사유가 된다
- 10)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하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야 한다
- 11) 약혼자가 타인과 간음하였을 때 파혼할 수 있다
- 12) 약혼자가 1년 이상 생사불명일 때 파혼할 수 있다
- 13) 약혼자가 이유 없이 혼인을 미룰 때 파혼할 수 있다
- 14) 파혼의 사유를 만든 당사자는 위자료의 책임을 진다
- 15) 약혼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파혼사유가 될 수 없다
- 16)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당한 경우 받은 배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 17) 약혼 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상대방에게 속인 경우 파혼사유가 된다
- 18) 과도한 혼수 요구로 문제가 생기면 파혼할 수 있다
- 19) 파혼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다

제2장 / 사실혼 ... 33

- 1) 남편 사망 후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 2) 혼인신고를 먼저 한 쪽이 법률상의 처이다
- 3) 전사(戰死)한 남편과는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 4) 혼인신고서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는 수리된다

- 5) 혼인신고가 없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는 부모의 자녀로 등록될 수 있다
- 6)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라도 제3자와의 혼인을 막을 수 있다
- 7) 사실혼을 해소하는 데에는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8) 사실혼 관계를 이유 없이 파탄시킨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 혼인생활을 방해한 시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0)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 11) 사실혼 해소 후 혼인예물의 반환
- 12) 사실혼 부부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 1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도 남편과 간통한 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4) 기혼자와 동거한 경우는 사실혼 관계로 보호받지 못한다
- 15)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헤어질 때의 위자료
- 16)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을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17) 사실혼의 처도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 18) 사실혼의 처가 남편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 19)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제3장 / 남녀관계 ... 47

- 1) 아들을 낳아 준다는 조건으로 가진 남녀관계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 2) 남편과 동거 중인 여자의 물건을 가져갈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 3) 결혼을 빙자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4) 서로 좋아서 맺은 미혼남녀의 성관계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5) 미혼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성과 친권, 양육권 문제

제4장 / 혼인 ... 51

- 1) 남녀 모두 만 18세가 넘으면 혼인할 수 있다
- 2) 동성동본(同姓同本)인 혈족 사이라도 혼인할 수 있다
- 3) 이성동본(異姓同本) 또는 동성이본(同性異本)은 혼인할 수 있다

- 4)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된다
- 5)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 6) 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 둘이 같이 하여야 한다
- 7) 혼인 시 부부의 협의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할 수 있다
- 8) 외국에서 혼인한 한국인 부부가 현지에서 혼인신고 하는 방법
- 9) 국제결혼일 때 외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방법
- 10) 외국인 여성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방법
- 11) 외국인 남성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방법
- 12) 영혼결혼은 법적 혼인이 될 수 없다
- 13)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 14) 혼인 기간이 짧은 이유만으로는 혼인무효가 되지 않는다
- 15) 사기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 1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惡疾)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 17)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 18)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19) 부부는 동거할 의무가 있다
- 20) 일상가사(日常家事) 때문에 아내가 진 빚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
- 21) 아내가 생활비 때문에 진 빚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
- 22) 아내 모르르게 진 남편의 빚은 아내가 갚지 않아도 된다
- 23) 혼인할 때 가지고 온 재산은 고유재산이다
- 24) 소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한다
- 25) 혼인 중 모은 재산의 처분을 막으려면
- 26) 부부 공동재산의 등기 방법
- 27) 부부의 재산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 이혼 ... 71

- 1) 이혼 절차
- 2) 협의이혼의 절차
- 3)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이 적용된다

- 4) 숙려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 5)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6) 외국 거주자의 협의이혼 방법
- 7) 부부의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 하는 방법
- 8) 부부 쌍방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협의이혼 방법
- 9)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 10)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면
- 11)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2)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 13) 허위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의 법적 효력
- 14)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 1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
- 16)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된다
- 17) 배우자의 부정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같은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
- 18) 상대방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 19) 간통죄의 고소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 20) 강간당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 21) 악의(惡意)의 유기(遺棄)는 이혼사유가 된다
- 22) 정당한 이유 없이 별거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
- 23) 가출이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 24)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한다고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25) 합의로써 별거하는 동안에는 별거를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 26) 한집에 살면서도 부부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
- 27) 정당한 이유 없는 잦은 가출은 이혼사유가 된다
- 28) 집을 나가 6개월이 되어도 자동이혼은 안 된다
- 29)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된다
- 30) 인격을 모욕하는 상스런 욕은 이혼사유가 된다
- 31) 경미한 폭력일지라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 32) 상해는 이혼사유가 된다
- 33) 시어머니가 부부생활을 방해할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

- 34)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된다
- 35)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
- 36)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 37) 배우자의 무시·모욕은 이혼사유가 된다
- 38) 성적 불능인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 39) 성적으로 불완전하다고 하여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40)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 41) 의치중이 심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
- 42) 주벽이 심하면 이혼할 수 있다
- 43) 재산 탕진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 44) 인터넷 중독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 45) 배우자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 46) 혼인 전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47)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혼할 수 없다
- 48) 가정을 돌보지 않는 지나친 신앙활동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 49) 형(刑)의 선고를 받은 남편과는 이혼할 수 있다
- 50) 정신병이라고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51) 불치의 정신병은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
- 52) 신체적 질병이 이혼사유가 되진 않는다
- 53) 놀면서 처가의 도움만을 바라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 54) 분수에 넘는 사치와 낭비도 이혼사유가 된다
- 55) 도박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
- 56) 상습적인 자살기도는 이혼사유가 된다
- 57)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 58) 남편의 생식불능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 59) 애정이 없는 것만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 60)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 61)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
- 62)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다

- 63)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 64) 이혼 시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 65) 양육비 액수는 다시 정할 수 있다
- 66)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 67)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를 만나 볼 권리가 있다
- 68)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된다
- 69) 위자료액의 산정 기준
- 70) 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
- 71) 이혼을 먼저 제의했다고 위자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 72) 위자료는 아내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73) 처의 가출을 이유로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는 못한다
- 74) 장인, 장모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 75) 사부모의 학대로 이혼할 경우 사부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 76)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77) 별거부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 78)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 79) 피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 80) 자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가
- 81)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 82) 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각서의 효력은
- 83)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되는가
- 84) 누락된 재산분할, 이혼 후 재청구 가능하다
- 85) 이혼 후 사실혼이 이어지다가 파탄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 86)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못하게 미리 재산처분을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87) 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되었다면 재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6-1 친자

- 1)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다
- 2) 자녀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만 친양자 입양청구가 가능하다
- 3) 친양자입양을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 친생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친양자입양
- 5)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 친부모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없다
- 6) 친양자입양이 되면 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
- 7) 친양자입양의 요건 및 절차
- 8) 친생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친양자입양 동의권자
- 9) 친생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10) 친양자 입양증명서는 발급이 제한된다
- 11) 친양자입양 시 시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2)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자녀가 친양자입양이 된 경우 친양자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13)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할 경우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14)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가 있을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15) 친양자입양을 원하나 자녀 나이가 15세를 넘은 경우 성변경청구는 가능하다
- 16)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 17)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姓)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
- 18) 혼인 외 자가 인지된 경우라도 종전의 성을 계속 쓸 수 있다
- 19) 혼인 중에 임신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 20)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닌 경우
- 21) 아내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2)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 또는 부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 23)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되어 있는 경우
- 24) 자녀가 사망한 경우의 친생부인
- 25)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26) 혼인 외 자가 생부를 등록부상 밝히려면
- 27)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생부를 밝히려면
- 28)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이 사망한 경우
- 29) 아이의 아버지가 등록부상 자녀를 올리지 않을 경우
- 30) 인지(認知)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의 효력
- 31) 착오에 의한 인지는 취소할 수 있다
- 32) 혼인신고 전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 33)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아버지는 양육책임이 있다
- 34)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록된 경우
- 35) 남편의 혼인 외 자가 부인이 낳은 아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36) 남편의 혼인 외 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는지
- 37) 등록부상 모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 38) 등록부상 모 성명 불상으로 기재된 경우 생모를 등록부에 기재하는 방법
- 39) 남의 자녀가 내 자녀로 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6-2 양자

- 40) 양자를 친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의 효력
- 41) 상대방의 전혼(前婚)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 42) 성년이면 미혼여성도 입양할 수 있다
- 43) 입양신고 방법
- 44) 성(姓)이 다른 아이도 양자가 될 수 있다
- 45) 유언으로 입양할 수 없다
- 46) 배우자 있는 자도 양자가 될 수 있다
- 47) 외국에서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 48)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는 일방적인 입양은 무효이다
- 49) 제3자가 역지로 입양시킬 수 없다
- 50) 친권자의 승낙 없이 입양된 경우 입양무효소송을 할 수 있다
- 51)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될 수 없다
- 52) 입양은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 53) 양자가 양친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입양이 될 수 없다
- 54) 손자를 입양할 수 있다
- 55) 입양취소청구 기간을 경과한 경우
- 56) 입양의 효과
- 57) 양자에게 나쁜 질병이 있을 때에는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
- 58) 양자가 전과자인 때에는 입양을 취소할 수 있다
- 59) 사기에 의한 입양은 취소할 수 있다
- 60) 형박에 의한 입양은 취소할 수 있다
- 61) 협의하면 파양(破養)할 수 있다
- 62) 15세 미만 양자의 협의파양 방법
- 63)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협의파양 할 수 있다
- 64) 재판에 의한 파양 사유
- 65) 양자가 양가의 재산을 탕진한 때에는 파양할 수 있다
- 66) 양친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파양할 수 있다
- 67) 재판상 파양도 파양신고를 해야 한다
- 68) 미성년자가 낳은 아이를 입양시킬 경우

6-3 친권

- 69) 친권(親權)은 부모가 같이 행사한다
- 70) 혼인신고 없는 생모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71) 이혼 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다
- 72) 이혼 소송을 하면서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73)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하다
- 74)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자녀를 유기한 경우
- 75) 후견인의 변경은 가능하다
- 76) 친권은 상실시킬 수 있다
- 77)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 1) 후견인의 순위
- 2) 후견인의 임무
- 3) 금치산자의 후견인
- 4) 후견인의 변경
- 5)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다
- 6)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7)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했는데 추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 8) 아내도 남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 9)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 10)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 11)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 12) 처자(妻子)를 버렸던 아버지도 부양을 청구할 수 있다
- 13)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부모도 부양을 청구할 수 있다
- 14)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이 있는 경우
- 15) 결혼한 딸도 친정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 16) 부모가 어느 집에 살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 17) 자녀는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 18) 양자로 간 아들도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 19) 부양의무는 며느리보다 아들, 딸이 우선한다
- 20) 형제자매 간에는 부양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 21) 친족 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있다
- 22) 부양의무에 대한 변경

- 1)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
- 2) 상속비용

- 3) 상속회복 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한다
- 4) 아버지의 유산을 딸아들이 임의로 단독 상속할 수 없다
- 5) 재산상속 순위
- 6) 태아(胎兒)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 7) 처와 형제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처에게만 상속권이 있다
- 8) 동시 사망 시 재산상속
- 9) 며느리는 사망한 남편을 대신하여 시아버지의 재산을, 손자는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 10) 사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
- 11)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한다
- 12) 자녀 없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배우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다
- 13) 혼인 외의 자녀도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
- 14)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 15)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 16) 양자로 간 아들도 생가(生家)의 유산을 받는다
- 17) 자녀 없이 사망한 며느리의 재산은 친정부모에게 상속권이 있다
- 18) 계모 재산의 상속
- 19) 1960년 이전에 상속개시된 경우의 법정상속분
- 20)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혼인 외 자의 법정상속분
- 21) 1960년 이전에 자녀 없이 사망한 남자의 재산상속권자
- 22) 1960년부터 1978년 사이에 상속개시된 경우의 법정상속분
- 23) 1979년부터 1990년 사이에 상속개시된 경우의 법정상속분
- 24) 상속개시된 경우의 법정상속분
- 25)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의 법정상속분
- 26) 동생을 죽이려 한 형에게는 재산상속권이 없다
- 27) 보증채무 상속 문제
- 28)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참여
- 29) 상속포기 약정은 상속개시 전에 하면 효력이 없다
- 30) 재산상속권은 포기할 수 있다

- 31)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고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2) 단순승인을 하면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다
- 33) 사망한 아버지의 부채는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 34) 한정승인 절차
- 35) 한정승인을 한 경우의 변제
- 36) 상속포기 절차
- 37) 상속포기서 포기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 38) 생명보험금의 상속 문제
- 39) 유족연금의 상속 문제
- 40) 상속포기신고자의 범위
- 41) 상속포기는 순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 4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43) 상속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한 사람은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
- 44)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특별부양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
- 45)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 46) 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
- 47)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 분할 방법
- 48)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 49) 분묘 등의 승계
- 50) 여성도 종중원의 자격이 있다

제9장 / 유언 및 유류분 ... 251

- 1) 유언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
- 2)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 3) 효력을 갖는 유언의 내용
- 4)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
- 5) 자필증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써야만 한다
- 6) 녹음에 의한 유언
- 7) 공정증서로 유언을 하려면

- 8) 유언 시 증인이 필요한 경우
- 9)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무효이다
- 10) 공정증서에서 유언취지 구수(口授) 요건의 의미
- 11) 비밀증서로 된 유언장은 반드시 엄봉납인(嚴封捺印)해야 한다
- 12)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 13)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허용 여부
- 14) 미성년인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증인이 될 수 없다
- 15)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16) 유언증서 검인절차
- 17) 유류분(遺留分) 제도
- 18) 유류분권자와 비율
- 19) 유류분의 재산
- 20) 특별수익분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된다
- 21)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
- 22) 유류분 부족분은 반환받을 수 있다
- 23)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족분을 반환해야 한다
- 24) 타인에게 유증된 집 대해 유류분 권리자는 부족분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 25)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증여하고 딸에게는 주지 않아 불만이더라도 생전의 행위를 다룰 수는 없고 상속개시 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제10장 / 가족관계등록법 ... 271

- 1)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는 목적에 따라 5종류로 나뉜다
- 2) 가족관계등록부 전체 기록 내용을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없다
- 3)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
- 4) 증명서 발급 신청권자의 범위
- 5) 상속 시 형제자매 관계를 알려면
- 6) 입양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증명서에 나타난다
- 7) 출생신고는 부모 아닌 사람이 할 수도 있다

- 8) 출생신고는 법에 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한다
- 9) 출생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생년월일을 제대로 올릴 수 있다
- 10) 부모의 잘못으로 다르게 기재된 등록부상 나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11)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등록부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이 가능하다
- 12) 등록부가 없는 자의 창설 방법
- 13) 등록창설 후에도 부모를 알게 되면 자기의 성과 본을 찾을 수 있다
- 14)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름을 고칠 수 있다
- 15) 쓰거나 읽기 어려운 이름은 고칠 수 있다
- 16)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 17)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 18) 위장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
- 19)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이면 그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20) 5년 이상 행방불명인 사람의 등록부는 정리할 수 있다
- 21) 실종선고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장 / 가정폭력특별법 ... 289

- 1) 가정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나
- 2) 상담원이 비밀을 누설할 위험은 없는지
- 3)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도 고소할 수 있다
- 4) 친동생도 고소할 수 있다
- 5) 시어머니도 고소할 수 있다
- 6) 부모도 자녀를 고소할 수 있다
- 7) 본인이 아니어도 고소할 수 있다
- 8)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어떤 도움을 주나
- 9) 임시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10)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
- 11)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12) 피해자도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13)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전과기록이 남나

- 14)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이혼이 되는지
- 15) 가정폭력특별법에 따라 고소한 뒤 취소할 수 있나
- 16) 보호처분의 내용
- 17) 상담위탁이란
- 18) 보호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 19)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란
- 20)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 21)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자녀를 전학시킬 수 있다
- 22) 가정폭력상담소가 하는 일은
- 23)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경우
- 24) 보호시설의 종류 및 입소기간
- 25) 피해자의 치료보호 지원

부록 / 가족법 개정 내용 ... 313

- 제정 가족법 주요 내용(1958년)
 제1차 가족법 개정 내용(1962년)
 제2차 가족법 개정 내용(1977년)
 제3차 가족법 개정 내용(1990년)
 제4차 가족법 개정 내용(2002년)
 제5차 가족법 개정 내용(2005년)
 제6차 가족법 개정 내용(2007년)
 제7차 가족법 개정 내용(2009년)

부록 / 가족법 조문 ... 333